

수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체육관광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 회신(체육지도자 배치)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팀-24208(2025.10.24.)호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과 관련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 1~2) 체육시설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관련한 [별표 5]에서는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수영장업의 경우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지도자 배치 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수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상기에 제시된 체육시설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체육지도자 배치는 ‘운동의 지도가 필요한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체육시설법의 기준에 맞게 상시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수영장의 경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체육지도자 외 수상안전요원이 별도로 상시 배치되어 있으므로, 수영강습 및 교육시간이 아닌 “자유수영”만이 실시되는 시간대에는 체육지도자가 필수적으로 ‘수영조(체육 활동으로서의 수영이 영위되는 공간, 즉 수영을 위한 수조)’ 에 배치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강습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자가 수영장 이용 시에 상시 배치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질의 3) 체육시설업 시행규칙 제 23조 관련 [별표 6]에는 “모든 수영조가 교습 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유수영일 또는 강습이 없는 날을 별도로 다루거나 수상안전요원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수영일에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겸하여 해당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수상안전요원 인원’ 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기의 검토 의견은 귀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내용)를 기초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